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60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김현정·박홍배·이기헌

부승찬 • 전재수 • 손명수

이개호 · 정태호 · 김기표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위원회를 구성하는 임명직 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 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

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호 삭제 등).

법률 제 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8조 각 호"를 "제8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 |
| 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 | | | |
| 다. |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u><삭 제></u> | | |
| 아니한 사람 | | | |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 |
|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 | |
|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 | | | |
| 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 | | | |
| 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 | |
| 1. <u>제8조 각 호</u> 의 어느 하나에 | 1. <u>제8조제1호·제2호 또는 제4</u> | | |
| 해당하는 경우 | 호부터 제7호까지 | | |
| | | | |
| 2.・3. (생략) | 2. • 3. (현행과 같음) |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① 원장 |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① | | |
|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 | | | |
| 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 | | | |
|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 | | | |
| 통령이 해임한다. | | | |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 4. (생 략)

② · ③ (생 략)

<u><</u>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